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(안)

의안 번호	222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6. 2. .
제안자 : 신길철의원

1. 제안이유

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 발전 및 영등포구의 공공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·연구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1)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 설립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전임의원으로 구성하고 사단법인으로 한다.(안 제2조 제①.②항)
- 2)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는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및 연구와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를 수행한다.(안 제3조 제1.2호)
- 3) 영등포구 사회복지, 환경, 교통문제 등의 연구, 기타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.(안 제3조 제3.4호)

3. 참고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발전과 영등포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·연구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(이하“의정회”라고 한다)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설립운영) ①의정회는 영등포구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.

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의정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사업)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방자치제도 발전과제 및 영등포구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·연구
2. 영등포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
3. 영등포구 사회복지, 환경, 교통, 문화에 관한 연구
4.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한 사업

제4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“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”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조(유사명칭 사용금지)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의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6조(운영규정)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